

# 『2025년 경기도 공공팹 활용 팹리스 기업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5년 경기도 공공팹 활용 팹리스 기업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7월 22일

경기도지사  
한국나노기술원장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로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빠른 기술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경기도 공공팹 인프라인 한국나노기술원의 화합물반도체 PDK를 활용한 MPW를 지원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시제품 개발 장벽을 낮추고 빠른 시장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5. 7월 ~ 2026. 6월,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시스템반도체 관련 기업 3개社

###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한국나노기술원 보유 250nm GaN 화합물 PDK 적용 MPW 제작 지원</li><li>3개 팀 지원, (설계 면적 4.5x4.5mm/팀) * 변동 가능</li><li>과제 예산으로 제작비 지원</li></ul>
KANC MPW	<ul style="list-style-type: none"><li>0.25um GaN HEMT tech., TFR, MIM cap.</li><li>T-gate with SFP, 28V operation</li><li>Air-bridge (w/o Backside Via)</li><li>PDK, Design Rule 제공</li></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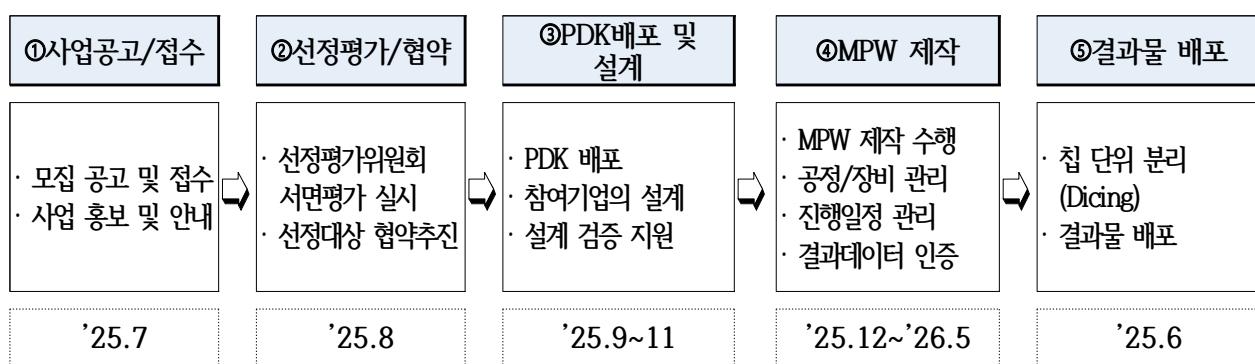
## 2. 신청자격

### □ 경기도 소재 시스템반도체 관련 팝리스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 기업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사업장), 공장등록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

## 3. 추진 절차

### □ 추진절차 및 일정



※ 평가, 선정, 협약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 될 수 있음.

##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7월 22일(화) ~ 8월 8일(금) 18:00까지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붙임] 참조

□ 신청방법 : 신청서류 E-mail(jaemoo.kim@kanc.re.kr) 제출

□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등 문의

주관기관	전 화	E-mail
한국나노기술원 CS에피개발실	031-546-6230	jaemoo.kim@kanc.re.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선정방법

### □ 평가방법

- (MPW제작 지원) 신청기업의 지원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격 검토, 관련 분야 전문가 5인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신청서류 서면평가

###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 (MPW제작 지원) 사업 아이템의 지원 목표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점수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 평균 70점 이상 득한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70점 미만 시 탈락)

### □ 평가 결과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되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음

## 6. 기타사항

###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 지원 신청 시 발생 된 소요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 □ 최종 결과에 대한 내용은 협의를 통해 사업 결과 보고에 사용될 수 있음

### □ 지원제외대상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지원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및 협약 이후에도 지원제외 사항 확인 시 지원 제외 및 협약이 무효처리 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 가. 부도기업
  - 나.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 다. 자본전액잠식 또는 부채비율 1,000% 이상인 중소기업

- 라.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 마.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견)기업
  - 바. 국세·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견)기업
-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및 공고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업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참여기관, 대표 및 과제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2022.1.7.)」에 따라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1회 이상)이 있는 기업 및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위반사실 적용 법률: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주의사항**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

-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배제
-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③ 경기도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